

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 
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#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임영은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1년 1월 11일

○ 회부일자 : 2021년 1월 12일

3. 제안이유

○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○ 적용범위(안 제3조)

○ 적용대상(안 제4조)

○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과 이송 등(안 제6조)

○ 민원인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(안 제7조)

○ 감사의견서 작성 및 결과의 통보(안 제9조)

○ 전문가심의단 운영(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

○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촉진하고, 행정의

적법성과 타당성을 높이며, 규제를 개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임.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을,
- 안 제4조에서는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내용을,
- 안 제6조에서는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과 이송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,
- 안 제7조에서는 민원인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,
- 안 제9조에서는 감사의견서 작성과 결과 통보에 대한 기간 및 이행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10조에서는 사전 컨설팅감사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는 규정 두고 있음.

- 이 조례안은 상위법률 근거는 없으나 국무총리령으로 「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」이 있고, 또한, 적극행정을 위해 현재 사전컨설팅 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,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붙임: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. 끝.